

제325회 정례회
2013. 12 10.(화)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2. 10.(화)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3년 11월 4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1월 6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1월 25일

- 제325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하여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능직·별정직·계약직 직종전환(정원의 총수 3,118명 : 변동없음)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	증194 (1,223 → 1,417)	△186 (186 → 0)	△8 (20 → 12)
· 기능직 → 일반직	186	△186	-
· 별정직 → 일반직 ※ 전문경력관 9명 포함	12	-	△12
· 일반직(계약직) → 별정직 ※ 비서 및 보좌관	△4	-	4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업무성격의 유사성, 인사관리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중심으로 공무원 직종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임.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며,
 - 계약직을 일반직(임기제공무원) 또는 별정직(정무직의 보좌인력)으로 통합하고,
 - 또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두되 근무기간 동안 인사관련 법령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업무 분야에 전문인력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위(전문경력관)를 둘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개정안은,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단순화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음.

- 다만,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본 조례안 제4조 또한 동일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11. 25, 심기보 의원
- 수정이유
 - 2013년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함.
- 수정 주요내용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수정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2013년 1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함에 따른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단서 중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제4조 단서 중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수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직급별 정원(전문
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u>직급별 정원</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u>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u>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u>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10% 이상	1%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 이내	84%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8%이내	14% 이내	31% 이내	37%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50%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118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17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6	41	7	5	7	6
5급이하 소계	1,327	-				
전문경력관 소계	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1	-				
연구직 계	143	-				
연구관	23	1		20	2	
연구사	120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방직 계	1,479	-				
소방정	12	3		9		
소방령이하	1,467	-				
교육공무원 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9
----------	-----

제출연월일 : 2013년 11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하여 기능직·별정직·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

2. 주요내용

- 기능직·별정직·계약직 직종전환(정원의 총수 3,118명 : 변동없음)

구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	증194 (1,223 → 1,417)	△186 (186 → 0)	△8 (20 → 12)
· 기능직 → 일반직	186	△186	-
· 별정직 → 일반직 ※ 전문경력관 9명 포함	12	-	△12
· 일반직(계약직) → 별정직 ※ 비서 및 보좌관	△4	-	4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체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직급별 정원”을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u>직급별 정원</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u>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u>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10% 이상	1%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16% 이내	84%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6% 이내	8%이내	14% 이내	31% 이내	37%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10% 이내	50%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채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118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17	-				
1~2급	1					1
2~3급	1		1			
3급	11	9		1		1
3~4급	2	2				
4급	66	41	7	5	7	6
5급이하 소계	1,327	-				
전문경력관 소계	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5급상당 이하 소계	11	-				
연구직 계	143	-				
연구관	23	1		20	2	
연구사	120	-				
지도직 계	24	-				
지도관	6			6		
지도사	18	-				
소방직 계	1,479	-				
소방정	12	3		9		
소방령이하	1,467	-				
교육공무원 계	42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1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 기능직공무원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 계약직공무원 삭제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